

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
의안 번호	1605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18. 10. .

제안자 : 의장 최상국

1. 주문

- 가. 2018년도 달성군 행정사무에 대한 원활한 감사를 위해 달성군의회는 ‘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 : 의장을 제외한 9명으로 한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,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.

3. 근거 규정

- 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40조
- 나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제2조
- 다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제4조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)

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제2조(행정사무감사)

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 행한다. (개정 2015.4.30)

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,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

(개정 2002. 3. 22, 개정 2011.9.23)

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, 감사위원회의 편성, 감사요령,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.

⑤ 의회의장(이하 ‘의장’이라 한다)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(위원)

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